

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4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(2009년 9월 3일)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도로과장 김정수)

□ 제안이유

- 「도로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976호, 2008. 3. 2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「도로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2조, 제4조제2항, 제6조, 제7조 및 제9조)
- 「도로법」 제40조 → 제38조, 제75조 → 제84조, 제43조제1항 → 제41조제1항, 제77조의2 → 제89조, 제80조의2 → 제94조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제40조 및 영 제24조”를 “제38조 및 영 제28조”로 하고
“제80조의2”를 “제94조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75조”를 “제84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3호 중 “건설교통부령”을 각각 “국토해양부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“건설교통부령”을 “국토해양부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법 제43조제1항”을 “법 제4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77조의2”를 “제89조”로 하고 “건설교통부령”을 “국토해양부령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69호
의결 년월일	2009. 9. 8. (제154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8. 21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도로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976호, 2008. 3. 2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「도로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2조, 제4조제2항, 제6조, 제7조 및 제9조)
- 「도로법」 제40조 → 제38조, 제75조 → 제84조, 제43조제1항 → 제41조제1항, 제77조의2 → 제89조, 제80조의2 → 제94조

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제40조 및 영 제24조”를 “제38조 및 영 제28조”로 하고 “제80조의2”를 “제94조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75조”를 “제84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·제2호·제3호 중 “건설교통부령”을 각각 “국토해양부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“건설교통부령”을 “국토해양부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법 제43조제1항”을 “법 제4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77조의2”를 “제89조”로 하고 “건설교통부령”을 “국토해양부령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)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,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,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에 따라 부과한다.</p>	<p>제2조(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) -----제38조 및 영 제28조 ----- ----- ----- -----제94조----- -----.</p>
<p>제4조 ① (생략) ② 법 제75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 ① (현행과 같음) ② - 제84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 ① (생략) 1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</p>	<p>제6조 ① (현행과 같음) 1. ----- ----- -----국토해양부령----- ----- -----</p>

